

● 제291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3.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김소양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1244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김소양 의원의 10명
- 나. 제안일 : 2020. 1. 31.
- 다. 회부일 : 2020. 2.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지난 2019년 11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1898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지정하도록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되었음.
- 이에 세계 여성의 날을 촉발한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시위보다 10년이나 앞선 역사적으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여성인권선언일을 서울시가 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기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여권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

을 높이고 성평등도시 서울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8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이 발표된 1898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여권통문의 날에 행사를 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권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성평등도시 서울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사항 검토

-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 기념 행사 및 지원 (안 제28조제3항 신설)
 -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¹⁾제38조제2항에 신설된 ‘여권통문의 날’을 기념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기념일로 지정한 날에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여성권의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심을 높이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 할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성평등주간 행사 등) ①		제28조(성평등주간 행사 등) ①		

1) 「양성평등기본법」제38조(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등) ②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 선언문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한다. <신설 2019. 11. 26.>

[제목개정 2018. 3. 2., 2019. 11. 26.]

<p>시장은 <u>법 제38조</u>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u><신설></u></p>	<p>----- <u>법 제38조제1항</u> -----</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u></p>
--	--

○ 특히 여권통문의 날은 현행조례(제28조제2항)²⁾ 및 상위법³⁾에 따른 세계여성의 날이 촉발된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보다 10년이나 앞선 1898년 9월 1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이 이루어진 날로, 우리 여성사에 있어 오랫동안 잊혀졌던 과거 여성들이 성불평등을 문제화하고 여권을 주장 및 나아가 여성의 자유해방을 선언한 날로 그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다 할 것임.

2)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28조(성평등주간 행사 등) ② 시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양성평등기본법」제38조(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등) ①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개정 2018. 3. 2., 2019. 11. 26.>

[제목개정 2018. 3. 2., 2019. 11. 26.]

여권통문(女權通文) 개요

- 의 의 :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
- 작성일 : 1898년 9월 1일
- 작성자 : 북촌(現 서울 종로구) 출신의 이소사와 김소사
- 작성장소 : 현재까지 알려 있지 않으나, 일부학자들은 여권통문을 다짐한(이시선 집) 신한은행 백년관(광고동) 자리를 기념장소로 추진 중
- 여권통문 내용
 - (교육권) 여성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은 남녀평등의식을 고양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여성은 정치참여 의식, 직업의 기회를 가진다.
*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 순성여학교 설립(1898.12)
 - (직업권) 여성도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다
경제활동은 여성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독립된 인격 확립의 시작이다.
 - (참정권) 여성도 문명개화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여성들도 개화정치에 등장해야 한다.
*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운동단체 찬양회 조직(1898.9)
- 신문게재 : 전문 『황성신문』 (1898.9.8.), 『독립신문』 (1898.9.9),
발췌문 『제국신문』 (1898.9.6), 독립신문 영자신문(1898.9.10)

출처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2019.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 2014220), pp. 6

○ 한편 「양성평등기본법」과 현행조례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과 주간이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상위법 ‘여성의 날’),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성평등주간’(상위법 ‘양성평등주간’), 9월 1일 ‘여권통문의 날’로 제각기 운영되고, 특히 조례와 상위법에 규정된 명칭도 달라, 이에 취지가 유사한 기념일들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져 시민들이 혼동을 느끼거나 관심이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주간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로 변경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조례 및 법에 따른 기념일과 주간>

명칭	날짜, 기간	근거
여성의 날 (세계여성의 날)	매년 3월 8일	「양성평등기본법」제38조제1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8조제2항
양성평등주간 (성평등주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 조제1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8조제1항
여권통문의 날	매년 9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제38조제2항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정된 ‘여권통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권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조례 시행에 있어, 상위법과 조례에 따른 기념일들이 제각기 운영되고 있고, 그 명칭 또한 서로 달라 시민들에게 혼동을 주거나 관심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